

배포 2026. 7. 7.(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7.(화) 12:00

(지면) 2026. 7. 8.(수) 조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조치
- 유아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 구체화
-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 마련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6.10.1. 시행) >

-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
-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가능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법을 위반하여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맞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사무관	조진행 (044-203-7031)
			주무관	이선형 (044-203-7034)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진단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란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아의 학습능력, 선행학습 정도 등을 확인·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2.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3. 외부 기관 또는 다른 학원 등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활용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유아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별표 5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	----------------	-----	-----	-----

현행 라목을 마목으로, 현행 마목을 바목으로, 현행 바목을 사목으로, 현행 사목을 아목으로, 현행 아목을 자목으로, 현행 자목을 차목으로, 현행 차목을 카목으로, 현행 카목을 타목으로, 현행 타목으로 파목으로, 현행 파목을 하목으로, 현행 하목을 거목으로, 현행 거목으로 너목으로, 현행 너목을 더목으로, 현행 더목을 러목으로, 현행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